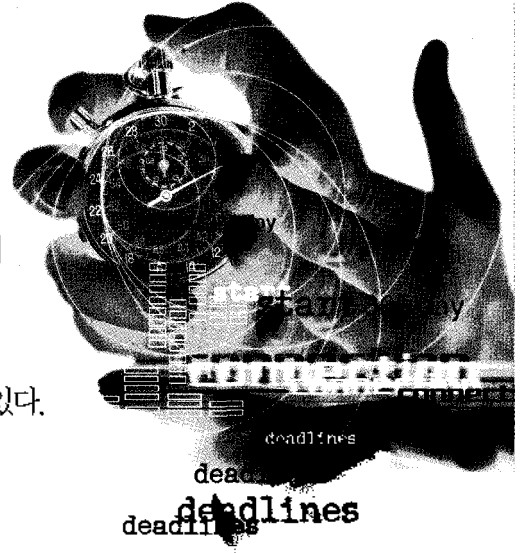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에이즈, 상한제 예외질환으로 인정돼야

:: 박광서 love4one(HIV감염인단체)대표

정부는 무분별하고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2002년부터 의료보험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있다. 좋은 취지의 이 제도는 365일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HIV감염인/AIDS환자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가 무분별한 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건전한 수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란 가입자, 피부양자가 병·의원에서 의료보험증을 사용하여 공단 부담으로 진료받은 일수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일수를 합하여 개인이 1년 동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총 365일로 제한되는 제도이다.

개인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 일수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대해서 공단은 본인으로부터 전액을 환수한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제207호, 2001.12.31)에 근거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감염인수 적다는 이유로 예외질환에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2002년 6월 10일자로 요양급여일수 산정 예

외적용 11개 질환군을 고시하였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해당하는 예외 질환은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기타 만성폐쇄성 폐질환, 악성 신생물, 대뇌혈관질환, 두개 내 손상, 만성신부전증이며,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미리 관할구청에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급여일수 연장 사전승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예외적용 질환으로 고시된 11개 만성질환 중 2가지 이상의 질환으로 중복해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는 요양급여 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다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있어 상한제 적용의 다르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예)

	당뇨	감기	총 급여일수
건강보험환자	30일	7일	30일
의료급여환자	30일	7일	37일

의료급여 수급자는 고시된 질환에 대해 상한일수 30일 추가 및 급여일수 연장 사전승인제를 시행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11개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중에 감기 등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다시 받을 경우 그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가 제외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물론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나 신청을 하기 위해 본인 및 보호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가서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다시 구청에 가서 연장승인 신청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연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1회 연장승인 일수는 최대 60일이므로 자주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치료제 투약만으로도 365일 사용

의료보험수가 365일 상한제에 따른 발표에 만성질환인, 11가지 제외 질병에 당뇨, 백혈병 등 모두 포함시키면서 에이즈가 빠져있어 감염인 단체인 리포원과 몇몇 뜻있는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립보건의원(현 질병관리본부) 정분에서 항의 집회를 가지며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했었다. 통화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려 했으나 통화내용은 절망적인 답변뿐이었다.

365일 상한제 제외 질병에 에이즈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환자수가 너무 적어서”라는 답변에 할 말을 잃었다.

우리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에이즈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을 시켜서라도 많은 환자가 발생하여야 한다 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HIV감염인/AIDS환자들은 완치제가 개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일단 투약을 시작하면 평생 을 지속해야만 하고 질병의 특성상 수많은 기회 질환을 앓게 된다.

평생 투약하면서 각종 기회질환을 앓다 보니, 1년 365일이라는 기간을 항바이러스제 투약으로 모두 쓰게 된다. 따라서 365일 상한제를 HIV 감염인/AIDS 환자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치료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인 치료만으로도 365일을 모두 사용하는데, 여러 기회질환으로 다른 진료를 받게 되면 그 일수만큼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데 필요한 일수가 모자라 연장신청이 필요하다.

유교적 사고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HIV감염인/AIDS환자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의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지금, 에이즈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감염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고, 알릴 경우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족 또는 보호자들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서 연장승인을 신청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연장승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본인이 에이즈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출되게 되어 HIV감염인/AIDS환자에게는 심리적인 부담 또한 큰 상황이다.

아직은 HIV 감염인/AIDS환자 수가 적어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책이지만 에이즈 질병의 특수성을 볼 때 환자수가 적은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지지와 제도적 뒷받침으로 인하여 HIV감염인/AIDS환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강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